
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공공기록물법 시행령)

[시행 2017.9.22.] [대통령령 제28303호, 2017.9.19., 일부개정]



행정안전부(정책기획과) 042-481-6226

제78조(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)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08.12.31., 2011.2.22., 2013.3.23., 2013.9.13., 2014.11.19., 2017.7.26.>

1.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
 - 가.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 - 나.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

이하 생략